환불규정

저희 Decenter University는 [정부에서 정한 법률]에 따라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교육 과정의 환불 정책 [학원법 시행령 제18조3항]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.

[환불기준(표)]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 금액
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총 교습시간의 ½ 경과 전	수강료의 %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½ 경과 전	수강료 ½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½ 경과 후	미환급
	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개시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(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를 전액 합산한 금액

* 환불 준수 사항

- 1. 수강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 시 이는 교습시간으로 인지하며, 환불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됩니다.
- 2. 온라인 현금결제 환불의 경우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불됩니다.(법인일 경우,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)
- 3. 온라인 카드결제의 경우 방문하지 않아도 환불 가능합니다.(단 university@decenter.kr 로 환불의사를 전달해야함)

